

대출상품설명서(고객용)

다음은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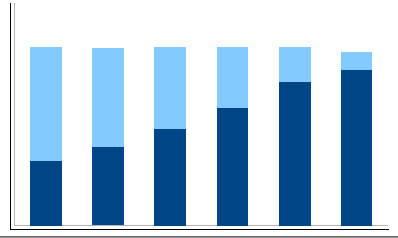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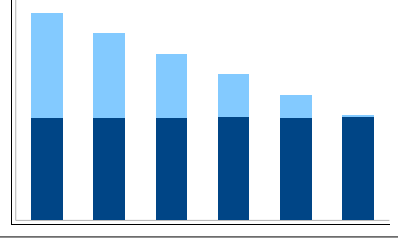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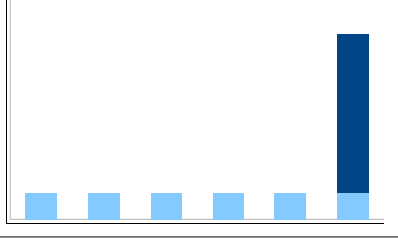
- ① 대출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연체이자율 및 중도상환수수료(1. 상품개요 및 특성), 기한이익상실이유(3.대부이용자주의사항 제 1 항), 신용공여로 인한 개인신용평점하락 가능성(3.대부이용자주의사항 제 8 항), 연체정보 등 등록(3.대부이용자주의사항 제 9 항)
- ②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02-3452-388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6710-0831~4)로 연락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일	대출기간	개월
대출신청금액	금	원정 (₩	원)	채권보전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실제수령금액	금	원정 (₩	원)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출이자율	정상이율	고정연 ()%		※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3% 이내”	
	연체이율	고정연 ()%			
대출상환방식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 (개별거래)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상환 (한도거래)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이자지급시기 및 이자의 세부내역	이자는 매월 ()일에 지급 ※ (대부잔액 × 연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 이용일수(단,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대부잔액 × 연이자율 ÷ 12) × 이용개월수 ※ 대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총당순서는 비용,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 원금 순이며, ‘이자지급일 - 10일’ 이전 입금 시 해당 월 이자지급일에 미납한 이자를 한 번 더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 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합니다.				
이자율등의제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 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이자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20%를 동 이자 납입주기에 따라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일 0.05479%, 월 1.6666%, 3개월 5%, 6개월 10% 등)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자금액은 연이자율로 계산하며, 월이자율 등은 연이자율에서 단순히 사용기간을 나눈 값입니다. (예시) 대출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간별 이자납입 최고액(1년 365일 기준)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한도: 1일 5,479원, 10일 54,794원, 30일 164,373원, 90일 493,150원				
상환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주)엘하비스트대부		
	※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는 계약 후 발급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금 및 이자는 대출받은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저희 엘하비스트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명의로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근저당권설정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말소, 확인서면, 주소변경 등(채무자부담)			₩	원
	설정 시 법무사수수료 (채권자부담)			₩	원
	기타비용(항목:)			₩	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상환방법별 특징

상환방법	원리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상환방법별 월상환금 차이	 <p>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와 대출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p>	 <p>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이자는 줄어드는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p>	 <p>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p>

②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 대출금액 1,000 만원, 이자율 연 20% (단위: 원)

	1년			3년			5년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1년	11,083,327	11,116,135	12,000,000	5,027,774	4,459,632	2,000,000	3,816,664	3,179,268	2,000,000
2년				4,361,108	4,459,632	2,000,000	3,416,664	3,179,266	2,000,000
3년				3,694,432	4,459,600	12,000,000	3,016,663	3,179,266	2,000,000
4년							2,616,661	3,179,266	2,000,000
5년							2,216,642	3,179,197	12,000,000
합계	11,083,327	11,116,135	12,000,000	13,083,314	13,378,864	16,000,000	15,083,294	15,896,269	20,000,000

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집니다.

1. 대출기간이 길수록 부담이자 는 많아집니다.
2.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이자 는 달라집니다.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3. '만기일시상환'이란 이자지급일을 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개시일부터 매월 또는 일정 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① (기한의 이익 상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 12조 일부 내용

「기한의 이익」이란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서 채무자인 대부이용자가 당초 약정한 대출기간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 상환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나.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②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③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조달원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연장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연체이자율 상한)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대부원리금 상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상환계좌로만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기간의 연장) 최초 심사에 비해 신용도가 하락(개인신용평점 하락, 연체 발생 등)했을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공무원 등)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⑦ (채권의 양도) 대부업자가 계약서상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⑧ (신용공여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1.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⑨ (연체정보 등 등록)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계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체정보등’이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계약의 해지) 대출계약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⑪ (대부중개수수료) 대부이용자 등은 대부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⑫ (서민정책 금융상품 활용) 정부에서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운용 중이므로 신청대상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⑬ (대출사기에 주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 등은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신용평점 상향조정”, “대출진행비용”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객의 권리 안내

- ①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고객은 당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되고 일정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그 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는 청구가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금지 요청) 고객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제외)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을 제공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던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이용기간(보유기간) 등'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해당 내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구두·서면 및 유·무선의 방법을 통해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위 정보의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요구하는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결정,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자동화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고객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고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고객은 대부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⑦ (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부업자에게 방문,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청약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된 개설정보는 5영업일 이내 삭제됩니다.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위법계약 해지) 대부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⑨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 앞으로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업자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담 및 문의	구분	상담 및 문의
대부업등록조회	금융감독원(1332)	민원-분쟁신청	금융감독원(1332)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1332)	불법대부·추심신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정책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1397)	무로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인은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 대부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대부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필수적으로 제공됩니다.

고객 확인 : 20 고객명 : (서명/인)